

政黨法中改正法律案

의안	
번호	

제안연월일 : 2004. 3. .

제안자 : 정치개혁특별위원장

1. 제안경위

- 가. 제244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2004. 1. 8)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제244회 국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2004. 1. 13)에서 정당법소위원회가 구성됨.
- 나. 제244회 국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제2차 정당법소위원회(2004. 1. 15, 1. 27)에서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의 합의내용과 의원발의 법률안 4건등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그 내용을 통합·보완한 정당법중개정법률안을 심규철의원, 정의화의원, 김성순의원, 김성호의원의 서면동의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다. 제245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2004. 2. 9)는 정당법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정당법중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심사·의결함.

2. 제안이유

고비용 저효율의 정당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구당제도를 완전 폐지하도록 하고, 보다 많은 여성들의 원내 진출이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보완하는 등 새로운 정치풍토를 조성함으로써 우리 정치문화의 선진화를 이루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가. 법정지구당을 폐지하고, 정당의 구성은 중앙당과 시·도당으로 하도록 함(안 제3조).
- 나. 현행 서면에 의한 입·탈당 방법 외에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를 통하여도 입·탈당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대의기관의 결의를 전자서명을 통하여도 의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제23조 및 제29조의2).
- 다. 중앙당은 정당의 예산과 결산 및 회계검사를 확인·검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함(안 제29조제2항).
- 라. 국고보조금의 배분대상이 되는 정당은 중앙당에 정책연구소를 별도법인으로 설립하도록 함(안 제29조의3 신설).
- 마. 유급사무직원수를 중앙당은 100인 이내로, 시·도당은 5인 이내로 축소 변경함(안 제30조의2제1항).
- 바. 정당은 공직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당내경선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당내경선의 후보자로 등재된 자로서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

한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함(안 제31조제2항 및 제3항).

사.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중 100분의 50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하고,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중 100분의 30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제4항 및 제6항).

아. 보조금의 배분대상이 되는 정당은 당내경선사무중 투·개표사무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의4 신설).

자. 당내경선을 수탁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은 이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질문·조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의6 신설).

차. 당내경선을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등을 폭행하거나 경선사무와 관련한 시설등을 훼손한 경우, 당내경선의 후보자등을 폭행·협박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경선등의 자유를 방해한 경우 및 당내경선등과 관련하여 연설·방송등의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게 한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의2, 제45조의3 및 제45조의6 신설).

카. 당내경선의 위탁관리와 관련한 범죄의 조사를 위한 출석요구를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한 경우 및 현행범으로서 동행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안 제56조 신설).

政黨法中改正法律案

政黨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國會議員地域選舉區를 單位로 하는 地區黨으로 構成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特別市·廣域市·道에 黨支部를, 구·시·군에 黨連絡所를 둘 수 있다.”를 “특별시·광역시·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도당(이하 “시·도당”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로 한다.

제4조제2항중 “第25條 내지 第27條”를 “제25조 및 제27조”로 한다.

제4조의2제3항 본문중 “소속地區黨”을 “소속시·도당”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地區黨改編大會”를 “시·도당개편대회”로 하며, 동조제4항중 “地區黨”을 “시·도당”으로 한다.

제5조중 “地區黨”을 “시·도당”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地區黨의 創黨承認)”을“(시·도당의 창당승인)”으로 하고, 동조중 “地區黨”을 “시·도당”으로 한다.

제11조의2를 삭제한다.

제12조의 제목“(登錄申請事項-中央黨의 경우)”를“(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으로 하고, 동조제1항제2호중 “地區黨, 黨支部 및 黨連絡所”를

“시·도당”으로 하며, 동항제7호중 “地區黨의 代表者, 黨支部 및 黨連絡所의 責任者”를 “시·도당의 대표자”로 하고, 동조제2항중 “第26條의 要件을 갖춘 法定地區黨數 이상의 數의 地區黨登錄 寫本과”를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법정시·도당수 이상의 수의 시·도당등록 사본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同前-地區黨의 경우)”를“(시·도당의 등록신청사항)”으로 하고, 동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地區黨”을 “시·도당”으로 한다.

제13조의2를 삭제한다.

제14조중 “第12條 내지 第13條의2”를 “제12조 및 제13조”로 한다.

제20조제1항중 “地區黨”을 “시·도당”으로 하고, 동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 전단중 “地區黨”을 “시·도당”으로, “地區黨委員長”을 “시·도당의 대표자”로, “創黨準備委員長은”을 “창당준비위원회의 대표자는”으로 하고, 동조제3항 전단중 “地區黨”을 “시·도당”으로, “해당地區黨”을 “해당 시·도당”으로 한다.

이 경우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로도 입당신청을 할 수 있다.

제21조중 “地區黨”을 “시·도당”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중 “地區黨”을 “시·도당”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전단중 “所屬地區黨”을 각각 “소속시·도당”으로, “上級黨部”를 “중앙당”으로 하고, 동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

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중전의 제2항)중 “地區黨”을 “시·도당”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전의 제3항)중 “上級黨部가”를 “중앙당이”로, “해당地區黨”을 “해당시·도당”으로 한다.

이 경우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로도 탈당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탈당의 효력은 탈당신고서가 소속시·도당 또는 중앙당에 접수된 때에 발생한다.

제24조중 “地區黨”을 “시·도당”으로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법정시·도당수) 정당은 5 이상의 시·도당을 가져야 한다.

제26조를 삭제한다.

제27조의 제목“(地區黨의 法定黨員數)”를“(시·도당의 법정당원수)”로 하고, 동조중 “地區黨은 30人 以上”을 “시·도당은 1천인 이상”으로 한다.

제29조제2항중 “第1項”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여 이를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중앙당은 정당의 예산과 결산 및 그 내역에 관한 회계검사 등 정당의 재정에 관한 사항을 확인·검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의2(서면결의의 금지) ①대의기관의 결의와 소속국회의원의 제

명에 관한 결의는 서면이나 대리인에 의하여 의결할 수 없다.

②대의기관의 결의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을 통하여도 의결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방법은 당헌으로 정한다.
제2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3(정책연구소의 설치·운영) ①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8조(보조금의 배분)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배분대상정당은 정책의 개발·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당에 설치한 정책연구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의2제1항중 “150人 이내(黨憲으로 정하는 일정한 資格 등을 갖춘 政策開發研究員은 그 數에서 제외한다), 黨支部에는 5인 이내, 地區黨에는 2인 이내로 하되, 구·시·군의 黨連絡所에 각 1인을 둘 수 있다.”를 “100인(제29조의3의 규정에 따른 정책연구소의 연구원은 그 수에서 제외한다)을, 시·도당에는 5인을 초과할 수 없다.”로 한다.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중 “100分の 30 이상”을 “1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동조제6항중 “地域區市·道議會議員選舉候補者중”을 “지역구국회의원선거후보자 또는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로 한다.

②정당은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선거(이하 “당내경선”

이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 절차는 당헌으로 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내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당내경선의 후보자로 등재된 자로서 당해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공직선거에서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다만, 공직선거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사퇴·사망·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의3 내지 제31조의6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3(당내경선운동) ①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다음 각호의 방법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0조의3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
2. 정당이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1종의 홍보물을 1회에 한하여 당내 경선의 선거인에게 발송하는 방법
3. 정당이 당내경선의 선거인을 대상으로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옥내에서 개최하는 방법

②정당이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홍보물을 발송하거나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당내경선운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9조(선거비용등의 정의)의 규정에 의한

선거비용으로 본다.

④제1항제2호의 경선훈보물의 작성 및 제2항의 신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31조의4(당내경선사무의 위탁) ①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8조(보조금의 배분)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배분대상이 되는 정당은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사무중 선거운동, 투표 및 개표사무 등의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②선거관리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3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내경선의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를 위탁관리하는 경우에는 투표 및 개표사무관리에 관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다만, 투표 및 개표참관인의 수당은 당해 정당이 부담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내경선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절차 및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31조의5(위탁하는 당내경선에 있어서의 이의제기) 정당이 제31조의4(당내경선사무의 위탁)의 규정에 의한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선거 및 당선의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는 당헌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정당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제31조의6(당내경선사무의 위탁과 관련한 범죄의 조사) ①제31조의4(당내경선사무의 위탁)의 규정에 의하여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을 위탁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은 이법을 위반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현행범의 신고를 받

은 경우 그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조사를 하거나
관련서류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72조의2(선거범죄의 조사 등)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이 법 제45조의2(당내경선관련 선거사무관계자
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내지 제45조의6(당내경선등의 허
위사실공표죄)에서 규정하는 범죄의 조사에 이를 준용한다.

제37조제1항 전단중 “지구당”을 “시·도당”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지구당은 제25조 내지 제27조”를 “시·도당은 제25조 및 제27조”로
한다.

제38조제1항제1호중 “제25조 내지 제27조”를 “제25조 및 제27조”로 한다.

제39조의2의 제목 및 본문중 “地區黨創黨承認”을 각각 “시·도당창당
승인”으로 한다.

제40조중 “地區黨創黨承認取消通知가 있을 때에는”을 “시·도당창당
승인취소통지가 있는 때에는”으로 한다.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45조의3 내지 제45조의6을 각각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당내경선관련 선거사무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
죄) 제31조의4(당내경선사무의 위탁)의 규정에 의하여 당내경선사무
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위원·직원, 참관인, 선거사무의 수행·
지원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임명·위촉한 자를 폭행·협박·
유인 또는 체포·감금하거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투표소·개표

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를 소요·교란하거나, 투표용지·투표지·투표보조용구·전산조직 등 경선사무와 관련한 시설·설비·장비·서류·인장 또는 선거인명부를 은닉·손괴 또는 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5조의3(당내경선등의 자유 방해죄) ①당내경선 및 대표자·투표로 선출하는 당직자의 선출을 위한 선거(이하 “당내경선등”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당선인을 폭행·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체포·감금한 자
2. 선거운동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僞計)·사술(邪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경선등의 자유를 방해한 자
3. 업무·고용 기타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지휘·감독을 받는 자에게 특정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한 자

②당내경선등과 관련하여 다수인이 선거운동을 위한 시설·장소 등에서 위협한 물건을 던지거나 후보자를 폭행한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주도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다른 사람을 지휘하거나 다른 사람에 앞장서서 행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3. 다른 사람의 의견에 동조하여 행동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제45조의4(당내경선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당내경선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1조의2(당원 등 매수금지)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공직선거후보자 또는 당직자로 추천 및 선출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거나, 선거인(당내경선등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여금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선거운동관계자·선거인 또는 참관인에게 금품, 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3. 제3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②제1항제2호·제3호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자 또는 제31조의2(당원 등 매수금지)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5조의5(당내경선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인한 이익의 몰수) 제45조의4(당내경선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죄를 범한 자가 받은 이익은 이를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45조의6(당내경선등의 허위사실공표죄) ①당내경선등과 관련하여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소속·신분·직업·재산·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한 자(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를 포함한다)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당내경선등과 관련하여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한 자(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를 포함한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3조제1항중 “제12조 내지 제13조의2”를 “제12조 및 제13조”로 한다.

제54조제2항중 “第23條第2項”을 “제23조제3항”으로 한다.

제5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31조의6(당내경선사무의 위탁과 관련한 범죄의 조사)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2. 형사소송법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에 규정된 현행범인 또는 준현행범인으로서 제31조의6(당내경선사무의 위탁과 관련한

범죄의 조사)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행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위반자에게 부과하며, 납부기한 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제기 또는 재판의 진행은 과태료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당내경선의 실시를 공고·결정한 당내경선부터 적용한다.

제2조(정당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정당은 제2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법정시·도당수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제3조(당지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당지부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시·도당으로 본다. 다만, 제1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사항 및 제27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법정당원수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개편·보완하여야 한다.

제4조(등록의 취소)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법정시·도당수, 등록신청사항 및 법정당원수를 개편·보완하지 아니한 정당에 대하여 당해 선거관리위원회가 등록을 취소한다.

제5조(지구당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의 지구당의 당원은 그 지구당이 소재하는 시·도를 관할하는 시·도당의 당원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의 지구당의 재산의 처분에 대하여는 제4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이 법 시행전의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구당의 관련서류는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 인계한다.

제6조(정당의 유급사무직원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등록된 정당에 대하여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7조(지구당 등의 등록말소) 이 법 시행전의 지구당 및 구·시·군연합소는 이 법 시행일에 그 등록이 말소된다.

제8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방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9항중 “政黨(政黨法에 의한 지구당을 포함한다)”를 “정당”으로 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8항중 “中央黨, 黨支部 및 地區黨과 區·市·郡連絡所를”을 “중앙당과 시·도당을”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第3條(構成) 政黨은 首都에 所在하는 中央黨과 國會議員地域選舉區를 單位로 하는 地區黨으로 構成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特別市 · 廣域市 · 道에 黨支部를, 구 · 시 · 군에 黨連絡所를 들 수 있다.</p> <p>第4條(成立) ① (생 략)</p> <p>②第1項의 登錄에는 第25條 내지 第27條의 要件을 구비하여야 한다.</p> <p>第4條의2(合黨) ① · ② (생 략)</p> <p>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政黨의 合黨이 成立한 경우에는 그 소속地區黨도 合黨한 것으로 본다. 다만, 新設合黨인 경우에는 合黨登錄申請日로부터 3月이내에 地區黨改編大會를 거쳐 變更登錄을 하여야 한다.</p> <p>④新設合黨된 政黨이 第3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變更登錄이 없는 경우에는 當該 地區黨은 消滅된 것으로 본다.</p>	<p>제3조(구성)<u>특별시 · 광역시 · 도</u>에 각각 소재하는 <u>시 · 도당</u>(이하 “<u>시 · 도당</u>”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p> <p>제4조(성립) ① (현행과 같음)</p> <p>②.....<u>제25조 및 제27조</u>.....</p> <p>제4조의2(합당)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u>소속시 · 도당</u>.....<u>시 · 도당개편대회</u>.....</p> <p>④.....<u>시 · 도당</u>.....</p>

⑤ (생략)

第5條(發起人) 政黨의 創黨準備에는 中央黨의 경우에는 20人이상의, 地區黨의 경우에는 10人이상의 發起人이 있어야 한다

第10條(地區黨의 創黨承認) 地區黨의 創黨에는 中央黨 또는 그 創黨準備委員會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第11條의2(黨支部등의 登錄申請) 政黨이 第3條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黨支部나 黨連絡所를 둘 경우에는 中央選舉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當該選舉管理委員會에 登錄을 申請하여야 한다.

第12條(登錄申請事項-中央黨의 경우)

① (생략)

1. (생략)

2. 地區黨, 黨支部 및 黨連絡所의 所在地와 名稱

3.~6. (생략)

7. 地區黨의 代表者, 黨支部 및 黨連絡所의 責任者와 그 會計責任者의 住所·姓名

②第1項의 登錄申請에는 代表者·

⑤ (현행과 같음)

제5조(발기인) 시·도 당.....

제10조(시·도당의 창당승인) 시·도 당.....

<삭제>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시·도당.....

3.~6. (현행과 같음)

7. 시·도당의 대표자.....

②.....

幹部 및 會計責任者의 就任同意書와 第26條의 要件을 갖춘 法定地區黨數 이상의 數의 地區黨登錄寫本과 第10條의2第2項의 規定에 의한 新聞公告에 관한 證憑資料 및 創黨大會 會議錄 寫本을 첨부하여야 한다.

.....
...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법정시·도당수 이상의 수의 시·도당 등록 사본과.....
.....
.....

第13條(同前-地區黨의 경우) ①地區黨의 登錄申請事項은 다음과 같다.
1.~4. (생략)
② (생략)

제13조(시·도당의 등록신청사항) ① 시·도당.....
1.~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第13條의2(同前-黨支部등의 경우) ①黨支部 및 黨連絡所의 登錄申請事項은 다음과 같다.
1.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責任者, 幹部 및 會計責任者의 住所·姓名
②第1項의 登錄申請에는 責任者·幹部 및 會計責任者의 就任同意書を 첨부하여야 한다.

<삭제>

第14條(變更登錄) 第12條 내지 第13條의2의 登錄申請事項에 變更이 생긴 때에는 2주일안에 變更登錄을 申請하여야 한다. 그러나 黨員의

제14조(변경등록)제12조 및 제13조.....
.....
.....

수의 變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20條(入黨) ①黨員이 되고자 하는 者는 署名捺印을 한 入黨願書를 地區黨 또는 그 創黨準備委員會에 제출하여 入黨申請을 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地區黨 또는 그 創黨準備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入黨願書를 접수한 때에는 黨員資格審査機構의 審議를 거쳐 入黨 許可與否를 決定하여 黨員名簿에 登載하고 地區黨委員長 또는 그 創黨準備委員長은 黨員證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入黨의 효력은 入黨申請人이 黨員名簿에 登載된 때에 발생한다.

③入黨申請人은 地區黨 또는 創黨準備委員會가 入黨願書의 접수를 거부하거나 또는 正當한 이유없이 入黨審議를 지연하거나 入黨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中央黨

.....
.....

제20조(입당) ①.....
.....시·
도당.....
.....
이 경우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로도 입당신청을 할 수
있다.

②시·도당.....
.....
.....
.....시·
도당의 대표자.....창당
준비위원회의 대표자는.....
.....
.....

③.....시·도당.....
.....
.....
.....
.....

또는 그 創黨準備委員會에 入黨願
 書를 제출할 수 있으며, 中央黨 또
 는 그 創黨準備委員會는 入黨許可
 與否를 審査하여 入黨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該當
 地區黨 또는 그 創黨準備委員會에
 申請人을 黨員名簿에 登載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入黨의
 효력은 入黨願書가 中央黨 또는
 그 創黨準備委員會에 접수한 때에
 발생한다.

第21條(居住要件) 法定黨員數에 해당
 하는 數의 黨員은 當該 地區黨의
 地域안에 居住하여야 한다.

第22條(黨員名簿) ①地區黨에는 黨員
 名簿를 備置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第23條(脫黨) ①黨員이 脫黨하고자
 할 때에는 脫黨申告書를 所屬地區
 黨에 제출하여야 하며, 所屬地區黨
 에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그 上級
 黨部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脫黨의 효력은 脫黨申告書가 소속
 地區黨 또는 上級黨部에 접수된 때
 에 발생한다.

.....

 해당
 시·도당.....

제21조(거주요건)
 시·도당.....

제22조(당원명부) ①시·도당.....

 ②·③ (현행과 같음)

제23조(탈당) ①.....
 소속시·도당.
 소속시·도당
 중앙당
 이 경우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
 서로도 탈당신고서를 제출할 수

<신 설>

②脫黨申告書を 接受한 當該 地區黨은 接受한 날로부터 2日안에 黨員名簿의 記載를 말소하고, 脫黨證明書を 교부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上級黨部가 脫黨申告書を 접수한 때에는 즉시 해당地區黨에 통보하여 黨員名簿의 기재를 말소하게 하고, 脫黨證明書を 교부하여야 한다.

第24條(脫黨員名簿) 地區黨에는 脫黨 員名簿를 備置하여야 한다.

第25條(法定地區黨數) 政黨은 國會議員地域選舉區總數의 10分の 1이상 에 해당하는 數의 地區黨을 가져야 한다.

第26條(地區黨의 分散) ①第25條의 規定에 의한 地區黨은 서울特別市·廣域市·道중 5이상에 分散되어야 한다.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탈당의 효력은 탈당신고서가 소속시·도당 또는 중앙당에 접수된 때에 발생한다.

③.....시·도당.....

④.....중앙당이.....해당시·도당.....

제24조(탈당원명부) 시·도당.....

제25조(법정시·도당수) 정당은 5 이상의 시·도당을 가져야 한다.

<삭 제>

②政黨이 서울特別市·廣域市·道 중 하나의 市 또는 道에 두는 地區黨數는 그 政黨의 地區黨 總數의 4分の 1을 초과할 수 없다.

第27條(地區黨의 法定黨員數) 地區黨은 30人 以上の 黨員을 가져야 한다.

제29조(정당의 기구) ① (생략)

<신설>

② 제1항의 기관의 조직·권한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는 당헌으로 이를 정하여야 한다.

第29조의2(書面決議의 금지) 代議機關의 決議와 所屬國會議員의 除名에 관한 決議는 書面이나 代理人에 의하여 議決할 수 없다.

제27조(시·도당의 법정당원수) 시·도당은 1천인 이상.....

제29조(정당의 기구) ① (현행과 같음)

②중앙당은 정당의 예산과 결산 및 그 내역에 관한 회계검사 등 정당의 재정에 관한 사항을 확인·검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제29조의2(서면결의의 금지) ①대의기관의 결의와 소속국회의원의 제명에 관한 결의는 서면이나 대리인에 의하여 의결할 수 없다.

②대의기관의 결의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을 통하여도 의결할 수 있

<신 설>

第30條의2(政黨의 有給事務職員數 제한) ①政黨에 들 수 있는 有給事務職員은 中央黨에는 150人 이내(黨憲으로 정하는 일정한 資格 등을 갖춘 政策開發研究員은 그 數에서 제외한다), 黨支部에는 5인 이내, 地區黨에는 2인 이내로 하되, 구·시·군의 黨連絡所에 각 1인을 들 수 있다.

② (생략)

第31條(公職選舉候補者의 추천) ① (생략)

② 政黨의 公職選舉候補者 추천에

으며, 그 구체적인 방법은 당헌으로 정한다.

제29조의3(정책연구소의 설치·운영)

①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18조(보조금의 배분)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배분대상정당은 정책의 개발·연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당에 설치한 정책연구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의2(정당의 유급사무직원수 제한)

①..... 100인(제29조의3의 규정에 따른 정책연구소의 연구원은 그 수에서 제외한다)을, 시·도당에는 5인을 초과할 수 없다.

② (현행과 같음)

제31조(공직선거후보자의 추천) ① (현행과 같음)

② 정당은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

는 候補者를 추천할 公職選舉의 選舉區를 관할하는 該黨部 대의기 관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 절차는 黨憲으로 정한다.

③政黨의 黨員으로서 黨憲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黨費를 납부하거나 無給으로 각급 黨部에서 自願奉仕를 한 者에 한하여 당해 政黨의 公職選舉候補者 또는 黨職者의 選舉權이 있다.

④정당은 비례대표전국선거구국회의원선거후보자중 100分の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⑤ (생략)

⑥정당은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 시·도의회의원선거후보자중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한 정당에 대하여는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하기 위하여 선거(이하 “당내경선”이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 절차는 당헌으로 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내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당내경선의 후보자로 등재된 자로서 당해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공직선거에서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다만, 공직선거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사퇴·사망·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100분의 50 이상
.....

⑤ (현행과 같음)

⑥.....지역구 국회의원선거후보자 또는 지역구 시·도의회의원선거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조금외에 같은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
.....
.....
.....

제31조의3(당내경선운동) ①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다음 각호의 방법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0조의3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
2. 정당이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1종의 홍보물을 1회에 한하여 당내 경선의 선거인에게 발송하는 방법
3. 정당이 당내경선의 선거인을 대상으로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옥내에서 개최하는 방법

②정당이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홍보물을 발송하거나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당내 경선운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직

<신 설>

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9조(선거비용등의 정의)의 규정에 의한 선거비용으로 본다.

④ 제1항제2호의 경선훈보물의 작성 및 제2항의 신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31조의4(당내경선사무의 위탁) ①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18조(보조금의 배분)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배분대상이 되는 정당은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사무중 선거운동, 투표 및 개표사무 등의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선거관리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3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내경선의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를 위탁관리하는 경우에는 투표 및 개표사무관리에 관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다만, 투표 및 개표참관인의 수당은 당해 정당이 부담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내경선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절차 및 필요한 사항은 중앙

<신 설>

<신 설>

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31조의5(위탁하는 당내경선에 있어서의 이의제기) 정당이 제31조의4(당내경선사무의 위탁)의 규정에 의한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선거 및 당선의 효력에 대한 이의 제기는 당헌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정당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제31조의6(당내경선사무의 위탁과 관련한 범죄의 조사) ①제31조의4(당내경선사무의 위탁)의 규정에 의하여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을 수탁관리 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은 이 법을 위반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현행범의 신고를 받은 경우 그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조사를 하거나 관련서류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72조의2(선거범죄의 조사등)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이 법 제45조의2(당내경선관련 선거사무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내

지 제45조의6(당내경선등의 선거관련 허위사실공표죄)에서 규정하는 범죄의 조사에 이를 준용한다.

제37조(정기보고) ① 중앙당과 지구당은 매년 12월 31일 현재로 그 당원수 및 활동개황을 다음연도 2월 15일까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당은 당해연도의 정책추진내용 (그 추진결과를 포함한다)과 다음연도의 주요정책추진계획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중앙당과 지구당은 제25조 내지 제27조의 요건에 흠결이 생긴 때에는 흠결이 생긴 날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등록의 취소) ① 정당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

1. 제25조 내지 제27조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게 된 때. 다만, 요건의 흠결이 정당이 후보자를 추

제37조(정기보고) ①.....시·도당.....
.....
.....
.....
.....
.....
.....
.....
.....
.....
.....

②.....시·도당은 제25조 및 제27조.....
.....
.....
.....
.....

제38조(등록의 취소) ①.....
.....
.....
.....

1. 제25조 및 제27조.....
.....
.....

천할 수 있는 공직선거일전 3월
안에 생긴 때에는 선거일후 3월
까지, 그 외의 경우에는 요건흡결
시부터 3월까지 그 취소를 유예
한다.

2. 3. (생략)

第39條의2(地區黨創黨承認의 취소)

中央黨 또는 그 創黨準備委員會는
地區黨創黨承認에 대한 취소사유와
절차를 黨憲 또는 創黨準備委員會
規約에 정하여야 하며, 黨憲 또는
規約에 規定된 사유외의 이유로 創
黨承認을 취소할 때에는 中央黨 또
는 創黨準備委員會의 代議機關에서
投票로 決定하여야 한다.

第40條(解散과 登錄抹消등) 第39條의

申告가 있거나 憲法裁判所의 解散
決定의 通知나 中央黨 또는 그 創
黨準備委員會의 地區黨創黨承認取
消通知가 있을 때에는 當該 選舉管
理委員會는 그 政黨의 登錄을 抹消
하고 지체없이 그 뜻을 公告하여야
한다.

제45조2(당원등 매수금지위반죄) 제
31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

.....
.....
.....
.....
.....

2. 3. (현행과 같음)

제39조의2(시·도당창당승인의 취소)

.....
시·도당창당승인.....
.....
.....
.....
.....

제40조(해산과 등록말소등)

.....
.....
.....
.....
.....
.....
.....
.....
.....

제45조2(당내경선관련 선거사무관계
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죄) 제31조의4(당내경선사무의 위탁)의 규정에 의하여 당내 경선을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위원·직원, 참관인, 선거사무의 수행·지원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임명·위촉한 자를 폭행·협박·유인 또는 체포·감금하거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투표소·개표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를 소요·교란하거나, 투표용지·투표지·투표보조용구·전산조직 등 경선사무와 관련한 시설·설비·장비·서류·인장 또는 선거인명부를 은닉·손괴 또는 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제45조의3(당내경선등의 자유방해죄)

①당내경선 및 대표자·투표로 선출하는 당직자의 선출을 위한 선거(이하 “당내경선등”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당선인을 폭행·협박 또

- 는 유인하거나 체포·감금한 자
- 2. 선거운동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僞計)·사술(邪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경선등의 자유를 방해한 자
- 3. 업무·고용 기타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지휘·감독을 받는 자에게 특정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한 자

②당내경선등과 관련하여 다수인이 선거운동을 위한 시설·장소 등에서 위험한 물건을 던지거나 후보자를 폭행한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1. 주모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2. 다른 사람을 지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앞장서서 행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 3. 다른 사람의 의견에 동조하여 행동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제45조의4(당내경선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당내경선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신 설>

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1조의2(당원 등 매수금지)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공직선거후보자 또는 당직자로 추천 및 선출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거나, 선거인(당내 경선등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여금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선거운동관계자·선거인 또는 참관인에게 금품, 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3. 제3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②제1항제2호·제3호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자 또는 제31조의2(당원 등 매수금지)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신 설>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5조의5(당내경선등의 매수 및 이
해유도죄로 인한 이익의 몰수) 제
45조의4(당내경선등의 매수 및 이
해유도죄)의 죄를 범한 자가 받은
이익은 이를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신 설>

제45조의6(당내경선등의 허위사실공
표죄) ①당내경선등과 관련하여 당
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
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
보·선전문서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
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소속·신분·직업·재
산·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
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
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
서를 배포한 자(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를 포함한다)는 3년 이하
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②당내경선등과 관련하여 당선되
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

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
 전문서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
 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
 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
 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
 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한 자(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를 포함한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제53조 (허위등록신청죄등) ①허위로
제12조 내지 제13조의2의 등록신
 청을 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 ③ (생략)

제53조 (허위등록신청죄등) ①.....
제12조 및 제13조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54조(諸義務懈怠罪) ① (생략)
 ②第23條第2項의 規定에 違反한 者
 는 1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제54조(제의무해태죄) ① (현행과 같
 음)
 ②제23조제3항.....

<신설>

제56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31조의6(당내경선사무의 위탁과 관련한 범죄의 조사)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2. 형사소송법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에 규정된 현행범인 또는 준현행범인으로서 제31조의6(당내경선사무의 위탁과 관련한 범죄의 조사)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행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위반자에게 부과하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선거

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제기 또는 재판의 진행은 과태료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